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호
----------	------

제출연월일 2005. 6. 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 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 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함(1호당 500원)
-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대로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연간 예상수입 20,000천원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수수료 원가계산 : 따로 붙임
 - 3) 입법예고(2005. 4. 27 ~ 5. 1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한다.

별표 1 <증명>의 제10호의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500원	
-----------------------	----	------	--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9호의 (1)중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표 같은란 제10호의 “민원사무처리규
정”을 “「민원사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 9(생략)	(생략)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기타제증명 (1)~(8) (생략)	(생략)	(생략)		10.- - - - -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u>개별주택 및</u> <u>공동주택가격 확인서</u>	1호	500원	

관계 법령 발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그 시기·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20060101] 제40조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수수료 원가계산 조사표

I. 수수료의 개황

- ① 수수료의 명칭 : 주택가격확인서
- ② 담당 부서 : 세무과
- ③ 근거 법 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④ 현 요 율 : 500(원)
- ⑤ 3년간 평균처리건수 : 없음
- ⑥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 5분
 - ⓐ 신청서 접수 : 1분
 - ⓑ 관계 공부 열람 : 3분
 - ⓒ 전산처리발급 : 1분

II. 수수료의 원가분석

구 분		원 가 산 출 내 역	원가액(원)
총 계			579.9
원 가 항 목 별	인건비	· 1,615,733원 ÷ 30일 ÷ 480분 × 5분	561.0
	감가상각비	· 컴퓨터 1,200,000원/대, 4년상각, 월25일, 일8시간, 3분기준	6.2
		· 프린터 1,300,00원/대, 5년상각, 월25일, 일8시간, 30초기준	0.9
		· 인증기 2,600,000원/대, 5년상각, 월25일, 일8시간, 30초기준	1.8
소모품비	· 현상액, 복사용지 등	10.0	

III. 원가보상율 : 현요율 ÷ 총계 = 87.7%